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2010. 8. 2.
행정문화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가. 이번 조직개편에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실현을 위해 유사·중복기능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통합하고 실·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나
- 나. 부서명칭 중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주민에게 익숙해진 부서명칭은 현재 명칭을 유지하고,
- 다. 실·국간 분장사무 중 적합하지 않은 분장사무를 조정하기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서명칭의 변경(안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- 경제진흥국 ⇒ 경제통상국
 - 균형개발방재국 ⇒ 균형건설국
 - 여성문화환경국 ⇒ 문화여성환경국

나. 분장사무의 변경(안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- 지역균형개발·발전에 관한 사항,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(정책관리실→균형건설국)
- 민방위, 국가기반보호,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(균형건설국→행정국)
-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(정책관리실 → 경제통상국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, 정책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여성환경국, 균형건설국,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정책관리실)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
2. 국·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·조정에 관한 사항
3.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
4.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
5.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
6. 행정의 창의실용, 지방분권,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
7.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8.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·군 재정 지도
9.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·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
10. 조례·규칙의 심사·공포,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
11. 각종 통계조사·분석 및 자료관리
12.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

안 제7조제11호와 같은 조제12호를 각각 같은 조제12호와 같은 조제13호로 하고, 같은 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민방위, 국기기반보호,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

안 제9조의 제목 “(경제진흥국)”을 “(경제통상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

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와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산업입지 계획·개발·지원·조성에 관한 사항
10.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11.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,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

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12조라 한다.

제12조(균형건설국)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지역균형개발·발전에 관한 사항
2.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
3. 국토이용계획·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4.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
5.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
6.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차이나월드 조성사업
8. 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
9. 기업도시 건설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
10.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
11.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12.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
13. 지방도, 시군도,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14. 국도대체우회도로,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15. 여객·화물 사업 및 자동차·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
16.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
17. 물류시설단지 관리
18.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19.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·지도
20.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
21. 재난관리, 재해예방대책,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
22. 토지정보의 조사·등록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·조정
23.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
24.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육성
25. 공공디자인,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

안 제11조의 제목 “(여성문화환경국)”을 “(문화여성환경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를 제10조라 한다.

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37조제1항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각각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“경제진흥국장·농정국장·여성문화환경국장·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“경제통상국장·농정국장·문화여성환경국장·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“경제진흥국장,여성문화환경국장,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“경제통상국장,문화여성환경국장,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“경제진흥국장, 여성문화환경국장, 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“경제통상국장, 문화여성환경국장, 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⑬ 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⑭ 「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, 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, 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⑮ 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하고,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⑯ 「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⑰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⑱ 「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과 중 “경제진흥국”을 “경제통상국”으로 하고, 제6조제3항제1호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⑲ 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⑳ 「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㉑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과 제19조제1항 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각각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㉒ 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제진흥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㉓ 「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과 제15조 본문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각각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4 「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5 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6 「충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과 제11조제3항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각각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7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여성문화환경국장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8 「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②9 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0 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와 제8조제3항 중 “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1 「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제진흥국장·보건복지국장·농정국장·균형개발방재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·경제통상국장·농정국장·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정책관리실, 행정국, 경제통상국, 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, 농정국, 보건복지여성국, 문화관광환경국</u>,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정책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진흥국, 균형개발방재국, 여성문화환경국, 농정국</u>,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정책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여성환경국, 균형건설국</u>,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
<p>제6조(정책관리실)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생략) 4.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5.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 6. 행정의 창의실용, 지방분권,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7.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.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9.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. 조례·규칙의 심사 공포,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1.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자료관리 12.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</p> <p><신설> <신설> <신설></p>	<p>제6조(정책관리실)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지역균형개발 발전에 관한 사항 5.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6.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7.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 8. 행정의 창의실용, 지방분권,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9.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0.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11.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2. 조례·규칙의 심사 공포,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3.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자료관리 14.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.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</p>	<p>제6조(정책관리실)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(삭제) (삭제) 4.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5.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 6. 행정의 창의실용, 지방분권,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7.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.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9.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. 조례·규칙의 심사 공포,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1.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자료관리 (삭제) 12.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자치행정 일반, 행정구역,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10. (생략)</p> <p>11. <u>민방위, 경보통제, 국가기반보호,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자치행정 일반,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11. <u>생활체육,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<u>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0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1. <u>민방위, 국가기반보호,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<u>생활체육,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3. <u>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8조(경제통상국)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국제교류 협력,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<u>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~ 17. (생략)</p>	<p>제9조(경제진흥국)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산업입지 계획 개발·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,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<u>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~17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경제통상국)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<u>산업입지 계획 개발 지원 및 조성</u>에 관한 사항</p> <p>7. ~ 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0. <u>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<u>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,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~1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0조(건설방재국)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3. 지방도, 시군도,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. 국도대체우회도로,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. 재난관리, 재해예방대책,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 6.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.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·지도 8. 토지정보의 조사·등록·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기획·조정 9. 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0. 기업도시 건설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1. 밀레니엄타운,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	<p>제10조(균형개발방재국) 균형개발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.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.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 4.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.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6. 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7. 기업도시 건설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8.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9.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.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1. 지방도, 시군도,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. 국도대체우회도로,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	<p>제12조(균형건설국)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균형개발 발전에 관한 사항 2.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.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.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.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 6.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.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8. 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9. 기업도시 건설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0.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11.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.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3. 지방도, 시군도,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. 국도대체우회도로,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설></u>	13. 여객·화물 사업 및 자동차·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	15. 여객·화물 사업 및 자동차·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
<u><신설></u>	14.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	16.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
<u><신설></u>	15. 물류시설단지 관리	17. 물류시설단지 관리
<u><신설></u>	16.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	18.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<u><신설></u>	17.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·지도	19.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·지도
<u><신설></u>	18. 민방위, 경보통제, 국가기반보호,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	20.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
<u><신설></u>	19. 재난관리, 재해예방대책,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	21. 재난관리, 재해예방대책,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
<u><신설></u>	20. 토지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	22. 토지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
<u><신설></u>	21.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	23.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
<u><신설></u>	22.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육성	24.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육성
<u><신설></u>	23. 공공디자인,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	25. 공공디자인,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
제11조(농정국)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제12조(농정국)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제10조(농정국)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~14.(생략)	1.~14.(현행과 같음)	1.~14.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3조(문화관광환경국) 문화관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</p> <p>5.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</p> <p>6. 관광, 레포츠 산업 육성,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7. 생활체육,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</p> <p>8.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9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</p> <p>10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,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</p> <p>11.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</p> <p>12. 대기·수질·토양·소음·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</p> <p>13.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</p> <p>14. 상·하수도 종합기획 조정</p> <p>15.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16.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1조(여성문화환경국)여성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</p> <p>5.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</p> <p>6.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7.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8.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</p> <p>9.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</p> <p>10. 관광,레포츠산업 육성,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11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</p> <p>12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,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</p> <p>13.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</p> <p>14. 대기·수질·토양·소음·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</p> <p>15.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</p> <p>16. 상·하수도 종합기획 조정</p> <p>17.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18.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제11조(문화여성환경국) 문화여성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18.(개정안과 같음)</p>